

현안분석 2011-09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 세 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1-09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이 세 정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tandard System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1.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표준제도는 일정한 표준 또는 기준 등에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거래질서의 유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이들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 현행법상 표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산업표준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밖에 특정 제품·서비스의 경우 개별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 그런데 단일 제품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법령에서 중복하여 표준을 인정받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혁신과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거나 제품개발시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그리고 국가표준을 총괄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변화와 신서비스산업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또한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경우 단순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의 표준화 요구에의 대응이 미흡하고, 표준제도와 결부되는 각종 지정·위탁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 그 밖에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 표준 등 민간부문의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표준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이나 민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민간의 표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
-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중복 규제 해소, 불합리한 표준제도의 합리화, 관련 절차의 정비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표준제도의 의의, 분류 및 그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국가표준기본법」상 표준제도, 「산업표준화법」상 표준제도, 개별법상 표준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제4장에서는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기대효과

- 이 보고서는 각종 표준 등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 표준제도,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표준인증제도, 단체표준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A standard system contributes to promoting public welfare, including public safety and transaction orders, by examining in advance whether something conforms to a certain standard or criteria; and securing standard systems is an essential step to enter the rank of the advanced countries.
- Currently,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nd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govern state and industrial standards, respectively,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set by each ministry govern individual products and services.
- However, when different standards for a single product are overlapped, they may discourage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or raise development costs, limiting consumer choices.
- Unclearly-defined work scopes of each government agency regarding national standards is also obstacles to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andard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new service industries.

- In addition, som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tandard system describe only superficial concepts that are not sufficient to respond to the market demands for standardization, and fail to define how to designate or commission related systems, leading to lack of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 Although the leadership role in developing and utilizing standards has shifted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demands for new standards according to the ever-accelerating technology innovati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yet to be established and revised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standard system and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y suggesting how to eliminate redundant regulations, rationalize unseasonable systems and streamline relevant procedures.

II. Main Content

- In the second chapter, implications, categories and functions of the standard system were examined.
- In the third chapter,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tandard system were analyzed by two different systems: stan-

dards governed by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nd those governed by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 In the fourth chapter, suggestions were described to revis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tandard system.

III. Expectations

- This repor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1) reducing wastes of physical, administrative and human resources that would otherwise be put into the standard-obtaining procedures, 2) securing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relevant systems, and 3) establishing a standard management system.

➤ **Key Words** : Standard System,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Certification of Standards, Collective Standard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4
제 2 장 표준제도 일반론	17
제 1 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및 연혁	17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17
2. 표준 및 표준화의 연혁	20
제 2 절 표준의 분류	22
1.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22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	23
3.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	26
4. 국제표준 · 지역표준 · 국가표준 · 단체표준 · 회사표준	27
5. 강제표준과 임의표준	32
제 3 절 표준제도의 기능	32
1. 기 능	32
2. 기능의 변모	33

제 3 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5
제 1 절	국가표준제도	35
1. 의 의		35
2. 국가표준기본계획		36
3. 국가표준시행계획		37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42
제 2 절	산업표준제도	49
1.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개념		49
2. 산업표준화 절차		50
3.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51
4. 단체표준의 제정 등		59
제 3 절	개별법상 표준제도	61
1. 개별법상 표준제도 현황		61
2. 국토·해양분야 표준제도		64
3. 농림·수산·식품분야 표준제도		70
4. 문화·관광분야 표준제도		80
5. 보건·복지분야 표준제도		84
6. 지식·경제분야 표준제도		86
7. 행정·안전분야 표준제도		95
8. 방송·통신분야 표준제도		98
제 4 장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	101
참 고 문 헌		10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법상 다수의 법령에서 특정 기기, 제품, 서비스 등이 법상 정해진 표준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청이 검토하여 인정하는 표준제도를 각종 인·허가를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준제도는 일정한 표준 또는 기준 등에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거래질서의 유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이들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표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산업표준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밖에 특정 제품·서비스의 경우 개별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단일 제품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법령에서 중복하여 표준을 인정받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혁신과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장애요소로 기능하거나 제품개발시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법상 표준화 시책이나 계획 수립시 국가표준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국가표준을 총괄하는 기관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변화와 신서비스산업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경우 단순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의 표준화 요구에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표준제도와 결부되는 각종 지정·위탁 제도 등

에 관한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표준의 제정·변경·폐지 시 이해관계인의 참여 제도를 둔 경우에도 그 절차를 완비하지 않아 형식적인 참여로 그칠 소지가 있다.

그 밖에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 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등 민간부문의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표준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이나 민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민간의 표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인·허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표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중복에 따른 중복 규제 해소, 불합리한 표준제도의 합리화, 관련 절차의 정비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종 표준 등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제도의 의의, 분류 및 그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표준(규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국가표준기본법」상 표준제도, 「산업표준화법」상 표준제도, 개별법상 표준제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

제점은 i)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분야, ii)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분야, iii)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분야, iv)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분야, v)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분야, vi)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분야, vii)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표준제도 일반론

제 1 절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및 연혁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표준(Standard)이란 포괄적 의미로 국가 각 분야에서 핵심적 가치를 규정하여 선별하고 확장하는 도구¹⁾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화·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동작절차·방법·절차·책임·의무·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²⁾을 의미한다. 즉 표준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제시된 규칙, 지침 및 기준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이러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³⁾ 또는 사물, 개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그 기준에 맞추는 것⁴⁾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제127조 제2항은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을 비롯하여 「산업표준화법」과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표준제도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은 ‘표준’ 그 자체를 정의하기보다는 표준을 ‘국가표준’, ‘국제표준’, ‘측정표준’,

1) 윤강술·강대경, 시장에 있어서 국제표준화의 채택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2호(상),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 27쪽.

2) 한국산업표준 KS A 3001.

3) 한국산업표준 KS A 3001.

4) 한장섭, 21세기 표준의 역할과 국제표준화 동향, 공업화학전망 제7권 제5호, 한국공업화학협회, 2004, 1쪽.

‘참조표준’, ‘성문표준’, ‘산업표준’으로 유형화하여 이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상 표준의 유형별 정의>

구 분	정 의	
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s)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측정표준 (masurement standard)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	
	국가측정표준 (national masurement standards)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
	국제측정표준 (international masurement standards)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
참조표준 (reference standard)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	
성문표준 (documentary standard)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	

구분	정의
산업표준 (industrial standards)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다시 산업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및 제2호).

- i)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 ii)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 iii)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 iv)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 v)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 vi)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 vii)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상에 따르면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이 표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로부터 일응 표준의 개념요소(Merkmal) 내지 개념적 특정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을 정의하면서 “...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라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을 “...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 …”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양자의 정의에서 표준은 기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하는 바, 양자는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표준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는 ‘통일성’을 들 수 있다. 즉 국가표준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기준을 말하고, 산업표준화는 다양한 종류나 치수, 형상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통일성은 다양성을 거부하는 개념으로 복수가 아닌 단수의 표준만을 상정한다. 바꿔 말하면 통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표준은 하나만이 존재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 역시 소위 ‘국가표준’의 형태로 단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표준제도의 목적과 통일성을 혼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통일하는 것이 표준의 목적이 아니라, 통일성은 표준 자체의 특징이며 그 목적은 국가표준의 정의와 「산업표준화법」의 목적에서 잘 드러나듯이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의 제고’(국가표준기본법 제2조 제1호) 내지 ‘산업경쟁력의 향상’(산업표준화법 제1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은 기준이기는 하나 통일성을 본질로 하여, 해당 분야 또는 지역에서의 정확성, 합리성, 효율성, 경쟁력 강화, 국제성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⁵⁾

2. 표준 및 표준화의 연혁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의 표준은 기원 전 7,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한, 규격화된 원통 모양의 deben(돌)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황소 1마리는 구리 119 deben이었다고 하고, 실제 사용되던 deben 추(錘)가 영국 대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동양에서는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전 각 나라에서 개별

5) 김병기,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중앙법학 제10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08, 366-367쪽 참조.

적으로 사용하던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여 소전체와 1홉 용기를 보급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⁶⁾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표준화에 관한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때마다 도량형(尺 : 길이, 量 : 부피, 衡 : 무게)을 제정하여 보급하였고, 특히 시스템 표준에 강한 면모를 보여 의궤(儀軌)를 작성하여 주요행사(예 : 종묘의궤)와 축성작업(예 : 화성성역의궤)의 계획 및 집행 관련 모든 절차를 기록·발간했다.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품질 매뉴얼(quality manual) 또는 표준 작업지침서와 비교할 수 있다.⁷⁾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표준화는 1949년 8월 「농산물검사법」의 제정으로 농산물의 중량, 등급, 포장 등에 대한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철도 등 공공사업분야의 자재 규격화가 착수된 것을 그 시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표준화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의 장기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공업품의 품질고도화·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1년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법률 제732호)을 제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고, 이에 따라 1962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표준인 ‘기어용어’(KS B 0101)를 제정·보급하였다.

1963년에는 세계 양대 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가입하였고, 1973년 1월 공업진흥청이 발족되면서 표준화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표준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양적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질적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와의 연계강화를 추진하였다.⁸⁾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은 2000년

6) 한장섭, 앞의 논문, 2쪽.

7) 한장섭, 앞의 논문, 2쪽 참조.

8) 범희권, 산업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표준화 정책방안, 유체기계저널 제7권 제3호,

대 들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2001년도에 8명이었던 ISO와 IEC 의장과 간사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28명이 되었고, 2001년도에 7건이었던 국제표준 제안이 2006년도에는 14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99건이나 되었다.⁹⁾

제 2 절 표준의 분류

1.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표준은 형식에 따라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문표준은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이나 국제표준인 ISO 규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측정표준은 길이, 무게 등의 측정단위나 특정한 양에 대한 척도(측정원기 등), 표준물질,¹⁰⁾ 측정시스템 등을 말한다. 참조표준은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를 말하는 것으로 인체유전자지도나 한국인 인체치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¹¹⁾

유체기계공업학회, 2004, 95쪽.

9) 김찬우, 한국의 산업화와 표준화정책,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 대한정치학회, 2011. 2, 179쪽 참조.

10) 표준물질은 기기의 교정이나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값을 부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잘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신소재의 개발 및 첨단제품의 출현은 날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를 선도하는 측정기술도 점차 고도화되어 측정의 정확도 관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상거래, 환경·안전대책, 각종 규제 등에 관계되는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준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표준물질이다. 국내 산업에서 생산, 시험, 연구, 신제품 개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수행되는 측정, 시험분석업무의 70%는 이러한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 및 안전을 포함하는 측정의 정확도 관리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897쪽.

11) 한장섭, 앞의 논문, 2쪽.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

표준은 제정 주체에 따라 시장(market)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성되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과 시장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행정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정되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나눌 수 있다.¹²⁾ 이와 같은 분류는 기업이나 국가가 표준화 전략을 구축할 때 주로 그 주체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³⁾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P. A. David 교수는 표준을 다음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비지원적(unsponsored) 표준으로 누구에 의해 관심 있게 만들어졌느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문서로 잘 정리되어 공적으로 활용되는 일련의 기술명세들이다. 둘째, 지원적(sponsored) 표준으로 표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고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의 기관(업체)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표준이다. 셋째, 국가표준화기구(NSO)나 이에 속한 표준제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정하고 발표하는 표준이다. 넷째,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제정하여 반포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이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생성되는 표준으로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하고, 셋째와 넷째는 일부는 시장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으나 표준제정기구의 위원회 또는 정부의 행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으로 공적 표준이라 한다.¹⁴⁾

12)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표준의 분류,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2/StdCate_Intro.asp?OlapCode=STAU010203 참조.

13) 김병기, 앞의 논문, 365쪽 각주 6번.

14)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371-372쪽.

(1) 사실상의 표준

사실상의 표준은 다시 고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발제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적으로는 이미 문서로써 잘 정립되어 있는 일련의 기술명세를 말하는 비지원적 표준(unsponsored standards)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고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발원기관이 공급자, 사용자 및 민간의 협력업체가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명세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표준인 지원적 표준(sponsored standards)로 나눌 수 있다.¹⁵⁾

사실상의 표준도 절차를 거쳐 공적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다음에서 설명한 공적 표준으로 지위가 바뀔 수 있다.¹⁶⁾

(2) 공적 표준

공적 표준은 다시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ANSI) 등과 같은 기관들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나 규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의무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이 의무표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각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ISO나 IEC 등에서 제정하는 표준도 공적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KATS)이 국가표준대표기관으로 ISO에 참여하고 있다.

(3)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의 차이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 표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¹⁷⁾

15) Ch. Knill, The Europeanis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s: Pattern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Persist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63-64.

16) 한장섭, 앞의 논문, 2쪽.

17)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표준의 분류,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2/StdCate_Intro.asp?OlapCode=STAU010203 참조.

- i) 사실상의 표준은 그 결정자가 시장(market) 메커니즘인데 반해, 공적 표준의 결정자는 공적 표준화 기관이다.
- ii) 사실상의 표준은 그 정통성이 사용자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에 반하여, 공적 표준의 경우에는 표준화기관의 권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 iii) 사실상의 표준의 경우 표준화의 동기는 표준화가 없어서 발생하는 불편에서 출발하나, 공적 표준의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지 않은 제품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 iv) 사실상의 표준의 경우 시장도입기의 점유율(share) · 유력기업의 참여가 관건인데 비하여, 공적 표준의 경우는 표준화기관의 강제력, 관련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 v) 표준화와 제품의 순서를 보면, 사실상의 표준은 사업화에서 표준결정으로 이동하지만, 공적 표준은 표준결정에서 제품화로 이동하게 된다.

(4) 사실상 표준과 공적 표준의 장 · 단점

공적 표준의 경우 결정과정이 투명하고 표준의 내용이 명확하고 개방적이며 원칙적으로 단일표준을 제공, 구성원의 자격(멤버십)이 비교적 개방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표준개발속도가 느리고 표준의 보급과 제품보급 사이에 시간격차(time lag)가 발생하며, 기술의 무임승차(Free Rider)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사실상의 표준은 결정속도가 신속하고 표준과 제품의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표준을 표준화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의 공개가 불확실하고 구성원의 자격(멤버십)이 폐쇄적이며 개정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다.¹⁸⁾

18) 한장섭, 앞의 논문, 3쪽;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표준의 분류, <http://www.stan>

3.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

표준을 분류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류체계는 표준을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인문사회적 표준은 언어·부호·법규·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전통·관습·권리·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과학기술계표준은 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 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측정표준은 길이, 시간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7개 기본단위와 2개의 보충단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유도단위를 현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기준과 측정계량단위 및 표준기준물 등을 말한다.

참조표준은 준참조자료(standards reference data, SRD)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은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분석, 심사하여 참조표준으로 설정하고,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믿고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반복 활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를 말한다.

성문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생산, 유통, 소비, 교통, 통신, 무역, 서비스, 보건, 교육, 행정, 국방, 건설, 환경, 생활 등)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적용하는 문서화된 규정, 사양, 용어, 부호, 기호 등을 말한다. 이상의 과학기술계 표준은 광의의 산업표준(industrial standards)라고 할 수 있다.¹⁹⁾

dard.go.kr/code02/user/0A/02/StdCate_Intro.asp?OlapCode=STAU010203 참조.

19)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표준의 분류,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2/StdCate_Intro.asp?OlapCode=STAU010203 참조.

4. 국제표준 · 지역표준 · 국가표준 · 단체표준 · 회사표준

표준은 적용범위에 따라 국제표준 · 지역표준 · 국가표준 · 단체표준 · 회사표준(또는 사내표준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적 표준에 해당하고, 단체표준, 회사표준은 사실상의 표준이 된다.²⁰⁾

(1) 국제표준

국제표준은 ISO나 IEC,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통신연합)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하여 여러 나라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표준을 말한다.²¹⁾ 우리나라는 1963년에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ISO

ISO는 전기 · 전자 이외의 기술,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분야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및 적합성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학문적 · 기술적 · 경제적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통하여 세계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설립되었다.²²⁾ 2002년 현재 139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가입하였다.²³⁾

ISO는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zion)이지만, ISO가 공공과 민간에서 특별한

20) 한장섭, 앞의 논문, 3쪽 참조.

21) 김창수, 표준과 인증의 이해, 대광서림, 2001, 20쪽 참조.

22)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기술표준원, 2010, 34쪽.

2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3052>.

위치를 갖는 것은 대부분의 회원이 정부기구이며, 민간회원일지라도 정부기관의 산하 또는 제휴업체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⁴⁾

ISO의 최초 규격은 1951년 발간된 ‘Standard reference temperature for industrial measurement’이다. ISO는 설립 이후 10년간 57종의 표준을 발간하였고, 1969년에 1,000번째의 표준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1985년에 5,000종, 1997년에 10,000종, 2007년에 17,041종을 보유하게 되었다.²⁵⁾

<ISO 표준 제정 현황>

연 도	1947	1957	1967	1977	1987	1997	2002	2004	2006	2007	2008
규격수	0	57	721	3,443	6,789	10,959	13,736	14,941	15,649	17,041	17,765

최근에는 재료기술, 공학기술, 전자/IT/통신, 수송/유통분야의 ISO 규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⁶⁾

2) IEC

IEC는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국제전기회의에서 전기 기기에 관한 용어와 규격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08년 영국 런던의 회의에서 13개국이 참가하여 창설되었다. IEC는 모든 전기공학적 표준화 문제와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시장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전기·전자 또는 기술 관련 국제 표준을 준비하고 발간한다. IEC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전자공학, 자기학, 전자자기학, 전기 음향학, 원격통신, 에너지 생산과 분배 등 모든 전기공학 문제와 전문 용어, 상징, 안전성, 환경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상관없이 IEC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회원국은 2002년 현재 61

24) 기술표준원, 앞의 백서, 34쪽.

25) 기술표준원, 앞의 백서, 36-37쪽.

26) 기술표준원, 앞의 백서, 37쪽 참조.

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3년 5월 공업진흥청이 가입하였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²⁷⁾

IEC에서는 회원국 간의 통일된 규격과 간소한 절차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자 적합성평가이사회(CAB) 소속으로 i) 전자부품 품질인증제도(IEC A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s; IECQ), ii)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IECEE), iii)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IEC Scheme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 IECEx) 등 3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⁸⁾

3) ITU

ITU는 1865년 5월 17일에 국제전신연합으로 창설하여 1932년 마드리드 만국무선전신회의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1932년 국제전기통신협정에 따라 국제전신협정과 국제무선전신협정을 통합하였고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1934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국제전신연합을 계승하였다. 1947년부터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가 되었다. 2002년 현재 189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52년에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처음에는 베른에 본부가 있었으나 1948년 스위스 제네바로 옮겼다.²⁹⁾

ITU는 전기통신 개선과 전파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꾀하고,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을 증진시키며, 이용과 보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발달·촉진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견을 조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³⁰⁾

27)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2938> 참조.

28) 기술표준원, 앞의 백서, 41쪽.

29)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2936> 참조.

30)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2936> 참조.

(2) 지역표준

지역표준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 유럽표준화 위원회),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 태평양지역표준회의)등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그룹별 국가 또는 지역별 기구단체에 의해 공통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³¹⁾

1) CEN

CEN은 유럽 18개국의 표준화 기구가 참가하여 1961년 창설된 이래, 약 400건의 유럽규격(EN)을 제정하였다. 1982년부터는 CEN/CENELEC의 공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제정된 EN규격을 자국의 국가규격으로 채용하며, 예컨대 NF-EN(프랑스), DIN-EN(독일) 및 BS-EN(영국)으로서 제정 발행한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18개 나라이다.³²⁾

CEN은 유럽지역의 제조자 및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 시험방법 등에 관한 유럽규격을 제정하고, 유럽연합의 공동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유럽 각국의 표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며, 유럽 내의 표준화 이행을 통한 기술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고, 유럽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CEN 마크를 인증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PASC

PASC는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표준분야에서의 태평양지역협력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1972

31)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0쪽 참조.

32)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4125>.

년 5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표준원(ANSI), 캐나다표준협회(SCC), 호주표준협회(SA),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등이 모여 창설하였다. 1973년 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호주, 일본 등 8개국 대표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후 제33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ISO 및 IEC와의 협력업무, 회원국 간의 협조 및 상호관심사에 관한 결의안 채택 등 지역 내 국제표준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³³⁾

PASC는 회원국 상호간에 표준화 관련 의견 및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무역 및 통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고, 지역적으로 편리한 곳에서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ISO나 IEC 등의 국제표준화 기구들에 전달할 건의문을 토론·작성하며, 향후 국제표준화에 필요한 사항과 표준화구조상 개선점을 토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³⁴⁾

(3) 국가표준

국가표준은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국가표준의 제정은 국가의 표준을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표준 제정 업무를 정부에서 행할 것인지 민간기구에서 추진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³⁵⁾

33) 기술표준원, 앞의 백서, 46-47쪽 참조.

34) 기술표준원, 앞의 백서, 47쪽 참조.

35) 국가표준제정기구로 미국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영국의 BS(British Standards), 독일의 DIN(Deutsche Normen), 일본의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등이 있다. 최환용, 앞의 보고서, 20쪽 참조.

(4) 단체표준

단체표준은 사업자단체인 조합, 협회 및 학회 등의 내부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단체표준은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제정하고, 사용한다. 단체표준의 개발에 드는 비용은 주로 해당 단체의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다.³⁶⁾

(5) 회사표준

회사표준은 기업 또는 공장의 사업장 내부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서, 일반적으로 표준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³⁷⁾

5. 강제표준과 임의표준

구속력 유무에 따라 특정한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기술기준에 따라 주로 사람의 안전이나 환경보호,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강제표준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임의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

제 3 절 표준제도의 기능

1. 기 능

표준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함으로써 호환성에 의한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수확체증현상을 가져오며 규모

36) 최환용, 앞의 보고서, 21쪽 참조.

37) 최환용, 앞의 보고서, 21쪽 참조.

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생산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특히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서로 다른 기업과의 상호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³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특히 품질·건강·안전 분야에서의 표준은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주며, 학습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³⁹⁾

정부의 입장에서는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공공복지 향상 등 사회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술기준을 국제표준과 부합시킴으로써 무역장벽 제거와 같은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⁴⁰⁾

2. 기능의 변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표준의 기능 내지 역할이 변하기도 하는데, 20세기의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시대에서 표준의 의미는 제품간 호환성 확보,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의 적정한 품질의 확보 등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표준을 제정·보급하였다.

이에 반하여 21세기 기술·지식·정보호시대의 표준은 서비스, 안전, 보안, 금융, 사회시스템 등 전분야로 확대되고 가고 있고,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for Trade : TBT)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전세계적 시장지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가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가표준보다는 국제표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등 민간부문의 표준의 중요

38) 한장섭, 앞의 논문, 3쪽 참조.

39) 한장섭, 앞의 논문, 3쪽 참조.

40) 한장섭, 앞의 논문, 3쪽.

성이 부각되고 있으며⁴¹⁾ 이에 따라 표준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이나 민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미재료시험학회(ASTM), 미기계학회(ASME), 미전기전자공학회(IEEE) 등이 제정한 표준은 미국의 단체표준이지만, 앞선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시장의 선택에 의해 표준으로 자리잡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미국 단체표준의 자국 위주의 표준 제정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부문 표준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오늘날 세계의 표준시장은 유럽 중심의 공적 국제표준과 미국 중심의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표준의 흐름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국제적인 단체표준 포럼·컨소시엄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⁴²⁾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민간표준화활동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표준정보기반 제공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종이에 인쇄되어 배포되던 표준도 정보화에 따라 On-line 공급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⁴³⁾

4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체표준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03-2005년의 기간 중 2,459건의 단체표준을 개발하였으며, 단체표준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표준 정보센터를 통하여 국내외 표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표준의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병기, 앞의 논문, 387쪽 참조

42)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371-372, 376쪽 참조.

43) 한장섭, 앞의 논문, 3쪽 참조.

제 3 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국가표준제도

1. 의 의

우리 헌법 제127조 제2항은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 1999. 2. 8. 법률 제5930호로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총 6장 3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표준제도는 국가표준의 제정, 보급, 유지 및 발전을 통하여 자연과 사물의 정확한 인식과 파악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전달, 국민상호간의 동질성과 신뢰성의 확립으로 부여된 자원과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국민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제도이다.⁴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국가표준의 내용은 크게 측정표준, 성문표준 및 참조표준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측정표준이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

44) 김재관, 국가표준제도의 이념과 정의, 1983, 27쪽.

정방법 또는 측정체계”를 말하고,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하며,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값,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제6호 및 제7호).

2. 국가표준기본계획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국가표준기본법 제4조),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기본계획에는 i)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i)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iii)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iv)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v)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vi)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vii)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viii)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1차 기본계획’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최초의 표준기본계획인 만큼 국가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국가표준심의회가 구성되었고, ISO/IEC 등 국제표준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이어 받아 심의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그 내실화를 추구했다.⁴⁵⁾

최근 종전의 산업중심의 표준은 서비스, 안전, 보안, 금융, 사회시스템 등 전분야로 확대되고 가고 있는 등 표준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표준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이나 민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정보기반 제공 역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민간중심의 상향식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50여 명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등 4대 분야를 중점 과제를 삼고 151개 세부시행과제를 도출했다.⁴⁶⁾

3. 국가표준시행계획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년도 시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생활공감서비스, 사회안전,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45)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12-13쪽.

46)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13쪽 참조.

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는 표준의 역할이 산업중심에서 서비스, 안전, 보안, 금융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어 국민 실생활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표준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⁴⁷⁾

2011년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⁴⁸⁾

(1)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에 대한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발된 원천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선점하기 위한 전략 마련 및 국가 R&D-표준을 연계한 표준개발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 시행계획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온실가스 관리 표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표준, 그린IT, 그린 수송시스템 등의 표준화 추진과 IT융합, 유무선 통신사업, 신소재 나노, 바이오 의료분야 및 기간산업 표준화, 게임, 3D, 문화 콘텐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표준코디네이터, PM(Project Manager)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표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산업별 맞춤형 국제표준 전략 등을 포함시켰다.

R&D-표준화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R&D-표준화 연계 추진단’을 구성, R&D-표준연계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배포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47)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13쪽 참조.

48) 2011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14쪽 이하 참조.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분야 예산 및 주요 추진계획>

부 처	예산 (억원)	주요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15	-스마트콘텐츠, Live 4D, 홀로그래피 표준화 등
농림수산식품부	3	-고유전통식품 CODEX 등록 및 국제표준화 등
지식경제부	375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BINT 융합 표준화, SW 등의 표준화 기반 마련 -표준코디네이터 도입 및 국제표준화 전략 -표준화 활동기관 및 개인 평가지표 반영추진 등
환경부	10	-기후변화, 온실가스 측정표준화 등
국토해양부	28	-교통정보(ITS) · 국가물류 표준제정 등
방송통신위원회	118	-그린 ICT,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표준화 -방송통신 전략분야 R&D-표준화 연계 강화 등
계	549	6개 부처 34개 세부과제

(2)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2011년 시행계획에서는 시간 및 비용의 과다 또는 중복 인증으로부터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도 내실화 및 인정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특히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시험 인증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시험인증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험 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시켰다.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구축 분야 부처별 예산 및 주요 추진계획>

부 처	예산 (억원)	주요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640	-신성장동력, 삶의질 분야 측정표준개발 등
지식경제부	209	-인증제도 중복해소, 적합성평가 글로벌화 등
보건복지부	4	-보건분야 적합성평가의 글로벌화 등
환경부	11	-환경분야 인증제도 중복해소, 적합성평가 구축 등
방송통신위원회	6	-수요자 중심의 방송통신분야 표준정보 구축 등
방위사업청	54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적 적합성 인정기반 마련
계	924	6개 부·청 26개 과제

(3)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

기존의 표준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의 표준정책은 국민생활편의 향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시행계획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선정, 국민생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요구나 표준화에 의해 품질개선이 시급한 우선대상 4대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과 인증의 확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11년 시행계획에서는 공공행정의 표준화를 통한 공공업무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의 업무연계를 지원하는 행정코드의 표준화, 공공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국가기록물관리·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 및 공간정보 객체에 공간정보참조체계(UFID)를 부여하여 정부·기관·산업간 상호 연계를 도모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에 장애인·노약자·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애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을 위한 표준 제공을 포함시키고 있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부처별 예산 및 주요 추진목표>

부 처	예산 (억원)	주요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18	-전자정부, 행정코드, 기록물 표준화 등
농림수산식품부	4	-전통식품 신규품목에 대한 표준화 추진 등
지식경제부	120	-국민생활편의·서비스 표준화 확대 -사회시스템표준, 제품안전 표준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설계 표준화 등
보건복지부	1	-u-H덱소 표준화, 장애인·노약자 표준화 등
환경부	7	-서비스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등
고용노동부	5	-KOSHA 가이드·기계안전보건 표준화 등
국토해양부	25	-공공·민간 공동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화 등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통신분야 보안 표준화 -전자파 안전 표준화 등
계	184	8개 부처 29개 세부과제

(4)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등

중전의 정부 주도의 표준에서 벗어나 민간의 표준 참여 기반을 향상시켜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 개발 등 민간중심의 상향식 표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바, 2011년 시행계획에서는 민간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표준개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 협력개발기관 지정 및 운영 제도 등의 활성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구현 분야 부처별 예산 및 주요 추진목표>

부처	예산 (억원)	주요 추진계획
지식경제부	49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개발기관 확대 -초·중·고·대학 표준강좌 개설 및 양성교육 확대 -민간표준 거점지구 확대, 기업표준지원 확대 등
환경부	8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등
방위사업청	14	-민·군 규격통일화 4차 계획 수립 -민·관·군 측정표준 협력체계 강화 등
방송통신위원회	52	-민간중심의 정보통신표준 개발 강화 -단체표준개발의 지속적 추진 -방송통신분야 표준전문가 교육·세미나 확대 등
계	123	4개부처 15개 세부과제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1) 총괄관리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업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다. 즉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고,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업무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한편, 같은 조는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라는 조명 하에 정부에게 산업표준,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여야 할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지식경제부장관의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에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과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질적인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부처에서 새로운 표준 제정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표준의 총괄관리를 위해서는 통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일원화하거나 또는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한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통합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1) 의 의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표준, 제품규격, 기술 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9호). 각 국에서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가 널리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부합과 함께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인정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적합성 평가 적용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시험, 검사, 인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 다시 강제제도와 임의제도로 구분되고 있다.⁴⁹⁾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 때 인증등을 강제화하거나 인증등의 마크의 표시를 강제화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제도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고하면 된다.

2) 표준인증심사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강제화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도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제22조의2 제1항). 표준인증심사제는 “설계평가, 시험·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같은 법 제3조 제20호)로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은 A 심사모듈부터 I 심사모듈까지 총 9개로 나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와 결부된 별표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법령에서 강제하는 경우에는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거나 또는 별표 5에 따른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인증등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여기서 같은 영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

49) 김병기, 앞의 논문, 376쪽.

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표준인증심사제 심사모듈을 도입할 때에는 별다른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변경통보를 하도록 한다면 도입시에도 통보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장은 소관 인증등에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제22조의4 제1항 본문). 국가통합인증마크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같은 법 제3조 제21호)으로서, 그 표시기준 및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6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인증 등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3항).

4) 시험·검사기관 인정

적합성평가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제도가 잘 정비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시험·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⁵⁰⁾를 말

50)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라는 용어는 강학상의 용어로 인정되고 있고, 법령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행정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방식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상의 법률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인정기구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인정기구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은 정할 것으로 기대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은 전혀 정하지 아니한 채, 제1항에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기구(및 운영기관)를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정된 인정기구가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에 따르면 지정된 인정기구는 기술표준원이 될 수도 있고, 민간기구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인정기구가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KAS), 한국인정원(Korea Accreditation Board; KAB)의 3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시험·검사·교정·표준물질생산·메디컬시험기관의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제품인정기구(KAS)는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인정원(KAB)은 품질경영,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

인정기구와 한국제품인정기구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내 정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인정원은 민간기구이다.

여기서 인정기구(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전혀 대통령령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정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거나 또는 사후적인 승인 절차 없이 민간기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민간기구인 한국인정원이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민간기구가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거나 또는 사후적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민간기구가 이를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민간기구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적 기구의 경우에도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식경제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일정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사후적인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소 결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을 그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권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⁵¹⁾의 장의 책임·권한 및 총괄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책임·권한이 매우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고, 특정 제도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개별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 과연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을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과연 총괄기관으로서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인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역시 미흡하다. 즉 일부 몇몇 조항에서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또는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국가표준제도의 통일성·단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복·부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기준이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예컨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표준물질의

51) 「국가표준기본법」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법령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인의 법적 가능성·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또는 선진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바, 그 정비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산업표준제도

1.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의 개념

「산업표준화법」상 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고(제 2조 제1호), 산업표준화란 i)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기능·내구도·안전도, ii)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製圖)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iii)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iv)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v)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관리, vi)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저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vii)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산업표준화법 제2조 참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면 산업표준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제3조 제8호)을 말하는데, 「산업표준화법」은 「국가표준기본법」상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산업표준화’로 정의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2. 산업표준화 절차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등을 할 때에는 산업표준안을 작성·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한편,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표준화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기술 발전, 기존의 산업표준의 부적합 등으로 새로 산업표준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가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산업표준의 제정 등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표준을 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은 한국산업표준(KS)이 된다(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참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날부터 5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이에 따라 개정이 고시된 산업표준 역시 한국산업표준(KS)이 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참조).

3.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는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정상품이나 가공기술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임의인증제도를 말한다.⁵²⁾ 「산업표준화법」은 크게 제품인증과 서비스인증으로 나누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부조달시 우선구매의 혜택이 부여되고,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전기용품 등 15개 법령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이 면제된다.

(1)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⁵³⁾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표준화

52) 기술표준원, 국가표준, http://www.kats.go.kr/htm/business_01/standard_03.asp 참조.

53)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정 업무는 기술표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표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 광공업품은 다음과 같다.⁵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 광공업품>

제 품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표준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산업표준화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원장이 수행하고 있다.

54) 기술표준원, 국가표준, http://www.kats.go.kr/htm/business_01/standard_03.asp 참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⁵⁵⁾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대상 서비스>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업 지원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광공업품 및 제품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23,622종의 한국산업표준(KS) 중 1,268종이며(2010년 12월말 기준), 부문별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수는 다음과 같다.

<부문별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기본 (A)	3	건설 (F)	136	섬유 (K)	27	수송 기계 (R)	26	정보 (X)	6
기계 (B)	234	일용품 (G)	45	요업 (L)	65	서비스 (S)	6		

55) 기술표준원, 국가표준, http://www.kats.go.kr/htm/business_01/standard_03.asp 참조.

제 3 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부문	심사 기준
전기, 전자 (C)	239	식품 (H)	103	화학 (M)	190	물류 (T)	-		
금속 (D)	163	환경 (I)	-	의료 (P)	13	조선 (V)	-		
광산 (E)	6	생물 (J)	-	품질 경영 (Q)	-	항공 우주 (W)	6		

*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기술표준원, 2010, 978쪽.

(2)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조달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된다(산업표준화법 제25조 참조).

(3) 인증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인증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산업표준화법 제26조 참조).

(4) 인증의 사후관리

「산업표준화법」은 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로써 정기심사제도(제19조) 및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제도(제20조)를 두고 있다.

1) 정기심사제도

정기심사제도는 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 3년마다 정기검사(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제품심사대상 품목은 매년 정기심사 중 공장심사를 제외한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에 따라 매년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용기 등, i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가스용품, iii)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안전인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보호구, iv)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생략하는 재료, v)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vi) 「산업표준화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검정·시험·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품목, vii) 기술표준원장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심사(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외에 사업을 양도받거나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

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 양도일 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중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심사를,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를 면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2)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제도

시판품조사제도는 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가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 중인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시판품조사)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현장조사)를 하는 제도이다.

앞서 설명한 정기검사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것에 반하여, 시판품조사는 언론의 고발이나 소비자단체의 요구 등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기술표준원장)이 직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검사하는 제도로서,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⁵⁶⁾

기술표준원은 2010년에 환풍기, 덕타일주철이형관, 나사식가단주철 제관이음쇠,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등 8개 품목 97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하여 이 중 결함이 발생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한국산업표준(KS) 표시 사용 정지 처분을 발한 바 있다.⁵⁷⁾

56)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985쪽 참조.

57)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985-986쪽 참조.

(5) 제재조치

1) 인증표시의 제거 등 조치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 실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하 “인증표시의 제거 등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제19조 제5항 및 제21조 제1항 참조).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제20조 제2항),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 등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상의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42조 제3호 참조).

2) 인증의 취소

① 필요적 취소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를 들고 있고, 이 경우 인증기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임의적 취소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i)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ii) 정기심사 결과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

지 아니한 때, iii)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이 발한 인증표시의 제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iv)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v)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vi)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3) 소 결

이상에 따르면 정기심사 실시 결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표시의 제거 등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증기관은 인증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발한 인증표시의 제거 등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내부적 절차이기는 하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관에게 인증받은 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 등 조치명령을 발한 사실을 알려 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인증기관이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취소는 단순히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나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

는 인증서비스의 취소에 다른 절차적 보장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증이 취소될 경우 1년 이내에는 재인증을 받을 수 없고 (제22조 제3항 참조),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비록 임의적 취소사유이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기는 하나, 단순히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것만으로 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규정하거나 또는 과태료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단체표준의 제정 등

최근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등 민간부문의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재료시험학회(ASTM), 미기계학회(ASME), 미전기전자공학회(IEEE) 등이 제정한 표준은 미국의 단체표준이지만, 앞선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시장의 선택에 의해 표준으로 자리잡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미국단체표준의 자국 위주의 표준 제정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부문 표준의 영향력 확대에 의해 오늘날 세계의 표준시장은 유럽 중심의 공적 국제표준과 미국 중심의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표준의 흐름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국제적인 단체표준 포럼·컨

소기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⁵⁸⁾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민간표준화활동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는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표준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i)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ii)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 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단체표준은 i) 해당 단체표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ii)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그리고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관련 규정은 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표준화법」상 단체표준제도는 그 제정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단체표준인증제도에 관한 규정도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민간부문의 표준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밖에 「산업표준화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사업을 행하는 자나 단체표준의 제정·운영 및 보급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58)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371-372, 376쪽 참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민간부문의 표준역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표준 개발·활용에서 민간 주도의 표준 개발·활용으로의 적극적인 전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단체표준 제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 3 절 개별법상 표준제도

1. 개별법상 표준제도 현황

현행법상 개별법령에서 표준(규격)제도 내지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크게 강제제도와 임의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국방 관련 표준의 경우에만 강제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임의제도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제품의 공급처가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을 띄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소관 부처의 장에게 표준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선언적 성격만을 띄는 것도 있다.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순번	법 률 명	조문	내 용	제도의 성격	소관 부처
1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3	설계 등 표준화	법정임의	국토해양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게임물 등 규격 표준화	법정임의	문화체육 관광부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	고령친화제품 등 표준화	"	보건복지부

제 3 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순번	법 률 명	조문	내 용	제도의 성격	소관 부처
4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4조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기술기준 등 표준화	"	국토해양부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행정안전부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표준인증 등)	법정임의	국토해양부
7	"	제92조	교통기술 표준화	"	"
8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군수품의 표준화	법정강제	국방부
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3조	군용항공기 관련 기술기준·검증과정 등 표준화	"	"
10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농산물 표준규격화	법정임의	농림수산식품부
11	도시철도법	제22조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화	법정임의	국토해양부
12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 표준화	"	지식경제부
13	방위사업법	제26조	군수품 표준화	법정강제	국방부
14	보건의료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선언적 성격	보건복지부
15	산업기술촉진법	제24조	산업기술 표준화	선언적 성격	지식경제부

순번	법 률 명	조문	내 용	제도의 성격	소관 부처
16	산업융합 촉진법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방장비·기술·인력의 표준화	법정임의	소방방재청
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	지식경제부
19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수산물 표준규격화	"	농림수산 식품부
20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
21	"	제21조	전통식품 규격화	"	"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디지털 뉴스의 분류 체계, 형식 등 표준화	"	문화체육 관광부
2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	지식경제부
24	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	식재료·경영기법 등 외식상품 표준화	"	농림수산 식품부
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음반등 표준화	"	문화체육 관광부
26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제11조	이러닝 표준화	"	지식경제부
2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제품 등 표준화	"	국무총리실
28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 전시사업자간 계약기준 등 전시산업 표준화	"	지식경제부
29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	전자거래 표준화		지식경제부 /법무부

제 3 장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순번	법 률 명	조문	내 용	제도의 성격	소관 부처
30	전과법	제63조	전과이용기술 표준화	법정강제	방송통신위원회
31	철도안전법	제34조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화	법정임의	국토해양부
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6조	콘텐츠 표준화	"	문화체육관광부

이하에서는 개별법상 표준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i)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분야, ii)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분야, iii)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분야, iv)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분야, v)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분야, vi)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분야, vii)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토·해양분야 표준제도

(1) 설계 등 표준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설계 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과

웰빙문화 정착에 따라 건축자재의 친환경·기능성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에너지·자원절약, 환경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요구도 증대하여, 에너지 고효율, 환경부하 저감형, 실내공기 오염물질 대응형 건축자재와 관련하여 표준화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⁵⁹⁾ 등 건설자재·부재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를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설계자,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자재·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⁶⁰⁾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2) 공간정보산업 표준제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활동으로는 i)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개정 활동, ii)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

59)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631-632쪽 참조.

60) 여기서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

의 연계·협력, iii)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활동을 들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참조). 「공간정보산업진흥법」상 표준제도는 민간에 의한 임의적 성격의 표준제도라 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다만,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의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은 지능형교통체계, 즉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이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고시하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은 강제적 성격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국토해양부장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제1항).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이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3) 표준인증 · 품질인증 표시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 ·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 ·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4)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 · 제품 및 서비스 등이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ii)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비 · 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iii)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i)’의 사유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ii)’ 및 ‘iii)’의 사유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문제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어떤 것은 표준인증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특히 같은 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표준인증기준 및

품질인증기준과 수수료 산정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고시는 제정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된 표준·품질인증 및 취소, 표시제도,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제도 및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고시가 조속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표준화

「도시철도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이를 도시철도차량 또는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29호, 2009.9.23, 일부개정·시행)과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8호, 2010.1.26, 제정, 2010.2.1, 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 표준은 임의적 성격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

(5)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

1) 의 의

「철도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은 임의적 성격의 표준이라 할 것이다.

2)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절차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당해 철도표준규격의 명칭·번호 및 제정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의견서에 i)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ii)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56조 제5항). 의견서를 제출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제7항에서는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32호, 2009.8.21, 일부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5) 소 결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철도안전법」상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의견제출절차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철도표준규격은 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 반영 등의 관점에서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농림·수산·식품분야 표준제도

(1) 농산물 표준규격

1) 의 의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은 품종, 재배지역 등이 다양하여 생산물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등으로 선도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시장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따라서 유통능률을 향상시

키고 신속·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상품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통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요구된다. 농산물 표준규격화에 따라 신용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정거래 촉진하며, 선별·포장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⁶¹⁾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표준규격제도는 1970년대 이전에는 곡물과 수출농산물의 수매중심의 국정검사 규격제도로 운영되었고, 1970~1980년대에는 농협에서 농산물 표준규격화 사업을 추진하되, 농협 자체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보급하고, 정부가 표준거래단량을 제정·고시하고, 포장·등급규격을 보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농협에서 품관원(구 농검)으로 표준규격 제정업무를 이관 하고, 종전의 포장재질, 포장단량, 포장치수 등 포장규격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소비생활 수준향상,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기준 정비 및 소포장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⁶²⁾

2)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된다.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되,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i) 거래단위, ii) 포장치수, iii)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iv) 포장방법, v) 포장설계, vi) 표시사항, vii)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20_01.jsp.

6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20_01.jsp 참조.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고르기, 색채, 모양, 당도 등의 다양한 품질요소와 크기, 무게에 의하여 「특」, 「상」, 「보통」 3단계로 구분되고, 크기는 무게, 직경, 길이를 계량기준으로 해서 L, M, S의 5~10단계로 구분된다.⁶³⁾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바, 농산물 표준규격은 임의적 표준이라 할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상 표준규격제도는 제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대적 변화, 기술발전 등을 이유로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도 있을 수 있는바, 그 절차에 관한 입법적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제2항). 이 때 품목, 산지, 품종(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생산연도(곡류만 해당한다), 등급, 무게 또는 개수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41호, 2010. 12. 27, 제정·시행)하는 바에 따라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6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20_01.jsp.

4) 표준규격품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i)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 기준 적합성 등의 조사, ii)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iii) 시료 수거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제1항).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

5)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해당 표시 규격에 미달되거나 그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이러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참조). 여기서 그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재적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벌칙의 구성요건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수 있고, 행정의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그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35조 제2호 참조).

(2) 수산물 표준규격

1) 의 의

수산물 표준규격화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즉 표준규격에 맞도록 품질, 크기, 쓰임새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함으로써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

수산물의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마찬가지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하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 등을 고려하여 i) 거래단위, ii) 포장의 크기, iii)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iv) 포장방법, v) 포장설계, vi) 표시사항, vii) 검역검사본부장이 품목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검역검사본부장은 「수산물 표준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91호, 2011.6.15,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고 있다.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수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수산물 등급규격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선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

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제2조 제3호).

검역검사본부장은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상 표준규격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시험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또한 수산물 표준규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제도의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시행규칙」 차원에서 개정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수산물 표준규격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수산물 표준규격은 임의적 표준이라 할 것이다.

3) 수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법률에서는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만을 표준규격품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수산물 외에 수산가공품을 표준규격품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이를 출하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i) 품목, ii) 산지, iii) 등급, iv) 무게 또는 개수(마리수), v) 생산자의 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준규격품을 수산물로 보는 것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 보는 것은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바, 이를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산가공품 역시 표준규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법률에서 언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표준규격품 허위표시등 금지 및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수산가공품 역시 표준규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품질·등급 등에 관한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산자단체는 그 소속 생산자에게 표준규격을 보급하고 선별 및 포장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와 같은 생산자단체에 의한 표준규격품 표시 및 자체점검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정하지 아니한 「수산물품질관리법」상 독특한 제도라 할 것이다.

4) 표준규격품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의 규격이 맞는지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제1

항 제1호 참조).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및 제56조 제1항 제5호 참조).

5)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생산자단체가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도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이 발해지고, 2차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은 가급적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와는 달리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외에 표준규격품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표준규격품 표시제도의 취지의 실현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 외에 판매의 금지나 표시의 정지명령을 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표준규격품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를 하거나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호 참조).

(3) 식품산업표준인증제도

1) 의 의

식품산업표준인증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운영하는 식품에 관한 산업표준인증제도를 말한다. 식품산업표준인증제도는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산업표준은 임의적 성격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표시방법 등

식품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고, 식품산업표준인증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하며, 식품산업표준인증의 기준·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4) 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인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

6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goodfood.go.kr/portal/certification/tradition1.jsp>.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및 그 고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고시 제2010-17호, 2010. 4. 27, 개정·시행)을 제정·고시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제품심사의 기준으로도 기능하는바, 전통식품 표준규격제도는 앞서 살펴본 여타의 표준제도와는 달리 ‘표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5) 외식상품 표준화

「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외식상품 표준제도는 임의적 표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도 아니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실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요건, 방법, 절차 등의 법적 근거 미비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외식상품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지정방법, 경비 지원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4. 문화·관광분야 표준제도

(1) 게임물 규격 등 표준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게임물의 규격,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게임의 진행·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게임물 규격 등 표준은 임의적 성격의 표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여기서도 앞서 외식상품 표준화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지정요건,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표준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뉴스의 분류체계, 형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i)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ii) 디지털 뉴스의 제작·저장·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뉴스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을 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의 제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참조).⁶⁵⁾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은 임의적 성격의 표준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디지털 뉴스를 “인터넷신문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제공·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뉴스 표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디지털 뉴스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거나 또는 명확한 위임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표준의

6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을 고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그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항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를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 제정의 법적 근거인 법 제20조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시 및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디지털 뉴스 표준의 고시 및 권고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음반 등 표준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음반 등 표준제도는 임의적 성격의 표준제도라 할 수 있다.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사항인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집행명령 차원에서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이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률의 직접적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⁶⁶⁾

66) 어떠한 기관을 행정청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여 지정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것인가를 법률상 분명히 하여야 한다. 누가 지정대상기관이 되는가를 분명히 정하지 아니한 채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이념인 “투명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오준근, 지정제도의 입법구조 분석, 월간법제, 법제처, 2002. 6.

(4) 콘텐츠 표준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이하 “콘텐츠 표준 제정 등”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콘텐츠 표준제도는 임의적 성격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할 것으로 기대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영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다른 사업, 예컨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역시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위탁 방법 및 절차 역시 같은 영 제1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임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다른 사업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보건·복지분야 표준제도

(1) 고령친화제품 등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⁶⁷⁾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이하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 제정 등”이라 한다),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2)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보건의료기본법」 제5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은 그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는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다.

67)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3) 의약품 유통정보 표준화

「약사법」상 명시적으로 표준 또는 표준화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1호, 2011.1.24, 일부개정·시행)을 근거로 의약품표준코드(Korea Drug Code; KD 코드)제도를 도입, 의약품 유통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표준코드는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한 번호로서 국가코드, 업체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한다. 의약품표준코드제도는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의약품표준코드는 의약품 바코드(유통코드)와 보험코드(EDI코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2009년에는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는 2010년부터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 중이다.⁶⁸⁾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⁶⁹⁾라 한다)는 2010년 12월 현재 56,606개 품목에 135,614개 표준코드를 부여·공고하고 있고,⁷⁰⁾ 총 6,422개 제품에 대한 바코드 부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2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⁷¹⁾

68)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0, 491쪽 참조.

69) 「약사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70)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491쪽.

71)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491쪽 참조.

의약품에 의약품표준코드를 부여·관리함으로써 의약품 생산에서부터 공급, 사용에 이르기까지 동일 코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⁷²⁾ 다만, 바코드 부착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약사법」상 그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표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지식·경제분야 표준제도

(1) 물류표준제도

「물류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 제6호). 여기서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i)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ii)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iii)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물류표준화는 원재료 공급업체부터 생산업체, 유통업체에 걸쳐 소비자에 이르는 제품의 생산, 포장, 적재, 운송, 하역, 보관, 배송 및 물류정보 등 공급사슬(supply chain) 전단계의 시스템화를 전제로, 물류활

72)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491쪽 참조.

동에 공통의 기준을 정하는 단순화(Simplification), 규격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류표준화를 통해 각 물류단계에서 사용되는 용기, 기기, 설비에 대한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전체 공급사슬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⁷³⁾

기업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운송화물의 기동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며, 국제물류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물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포장·보관·수송·하역 등 유통단계에서 유형의 재화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영의 핵심활동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비절감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 기업 내의 표준화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유통로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시스템의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⁷⁴⁾ 분야별 물류표준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야별 물류표준화에 따른 기대효과>

포장분야	수송분야	운반·하역분야	보관분야	정보분야
-파렛적재 용이	-수송비용 절감	-하역시간 단축	-재고조사 용이	-전산화 확대
-과대포장 방지	-연결수송 촉진	-하역비 절감	-보관비 감소	-시스템연계
-공간활용 제고	-적재적량 준수	-기계화 촉진	-기계화 및	촉진
-포장비 절감	-화물파손 최소화	-하역인력 경감	자동화	-정보시스템
			-보관기능 향상	활용
				-리드타임 절감

* 자료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606쪽.

73)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605쪽.

74) 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606쪽.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 제1항).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이상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표준제도는 임의적인 성격의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물류회계 표준화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물류회계 표준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i)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ii) 영역별·기능별 및 자가·

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iii)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iv)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고, 이에 따르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임의적 성격의 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3) 산업기술 표준화

「산업기술촉진법」 제24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⁷⁵⁾의 개발·이전·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i)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ii)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보급 및 확산, iii)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iv)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i)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ii)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iii)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iv)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⁷⁶⁾ 선진화에 관한 사

75)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산업기술촉진법 제2조 제1호).

76) 법정계량제도는 상거래 및 증명에 있어 계량으로 인한 측정결과가 이해관계자와 상충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기술표준원, 기술표준백서, 861쪽). 법정계량과 관련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항, v)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vi)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vii)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viii)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산업기술촉진법 제36조).

(4) 산업융합 표준화

「산업융합 촉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i) 산업융합 신제품 관련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ii)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iii) 그 밖에 산업융합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그리고 정부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한편, 정부는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을 i)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ii) 「산업표준화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iii)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v)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참조).

(5) 융합신산업 표준화

「산업융합 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합 신산업의 표준화와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과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같은 법 제21조 제1항),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⁷⁷⁾

(6) 소프트웨어 표준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표준은 임의적 성격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전문기관 지정 요건,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실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요건, 방법, 절차 등의 법적 근거 미비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7) 2011. 10. 현재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고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1) 개 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2) 지정 신청 및 요건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서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신청 방법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3호, 2011.9.19, 제정·시행)이 제정·고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고시 제6조에서는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수권 근거를 두고 법령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고시의 수권 근거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엄격하게 이해하면, 수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밖에 이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지정서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i)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ii)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iii)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 이러닝학습 표준화

현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⁷⁸⁾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i) 이러닝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ii)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iii)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고, 이러닝산업이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이러닝의 수행·평가·자문과 관련된 서비스업,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업, 이러닝관련 정보의 수집업, 그밖에 이

7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은 2011.7.25자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56호)로 개정되어, 2012.1.26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러닝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이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서의 정부를 ‘지식경제부장관’로 특정, 변경하였다. 이는 지식경제부장관을 특정하여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의 대행 및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닝 표준화 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것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도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추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9) 전시산업 표준화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고,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i)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ii)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

항을 준수한다), iii)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0) 전자거래 표준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i)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ii)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iii)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상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 행정·안전분야 표준제도

(1) 국가정보화 관련 표준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2) 지식정보자원 표준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i)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ii)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iii)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정보자원을 표준화할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종의 절차적 권리라고 볼 수 있는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표준에의 반영 여부 및 그 결과에 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한 절차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유통·활용·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3) 중요지식정보자원 표준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

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그 유통, 표준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가 도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때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4) 소방장비 등 표준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에 관한 검증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지정사실의 고시에 관한 사항,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전년도 사업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8. 방송·통신분야 표준제도

(1) 전파이용기술 표준화

「전파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i)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ii)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iii)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전파법」 제6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i) 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ii) 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iii) 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이다.

앞서 살펴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파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도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표준에의 반영 여부 및 그 결과에 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한 절차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서는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행정규칙은 제정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전파법 제65조).

(2) 방송통신기술 표준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i)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ii)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iii)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iv)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v)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는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같은 법 제23조 제2항),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추진 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2호).

제 4 장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

이상에서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국가표준기본법」상 표준제도, 「산업표준화법」상 표준제도, 개별법상 표준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상 정부의 책임·권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권한 및 국가표준관리 총괄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책임·권한이 매우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정 제도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개별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제도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기준이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법령에서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이나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표준제도의 체계적 확립 또는 선진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권한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책임·권한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책임·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국가표준제도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표준제도의 통일성·단일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규율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법률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정부 주도의 표준 개발·활용에서 민간 주도의 표준 개발·활용으로의 적극적인 전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표준 역량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의 제정·변경·폐지 시 이해관계자의 절차 참여와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고, 이는 개별법상 표준 제정·변경·폐지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상 인증취소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증취소는 단순한 권리 제한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에 단체표준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고, 민간 부문 표준화 촉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단체표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1개 조항에서만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하위법령도 미비되어 있는바, 정부 주도의 표준 개발·활용에서 민간 주도의 표준 개발·활용으로의 전환 추세에 부응하는데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단체표준 제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법상 표준제도와 관련하여 표준의 제정·변경·폐지의 절차가 명확하게 입법되어 있지 않거나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를 두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를 두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표준제도와 관련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많은 바 그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별법상 표준화 촉진기관이나 표준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을 명시하고 관련 요건이나 방법, 절차 등을 직접 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표준제도의 확립,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법률에서 구체적인 요건이나 방법, 절차 등을 직접 정하거나 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에 개별법률에서 각각 표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여러 부처에서 중복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표준인증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관련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기술혁신과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거나 제품개발시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대상 품목이나 서비스가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따른 품목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중복인증에 따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술표준원, 2010 기술표준백서, 기술표준원, 2010.
- 김병기,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중앙법학 제10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08.
- 김재관, 국가표준제도의 이념과 정의, 1983.
- 김중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 방안: 진입규제 개혁의 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9.
- 김창수, 21세기 표준과 인증의 이해, 대광서림, 2001.
- 김찬우, 한국의 산업화와 표준화정책,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 대한정치학회, 2011. 2.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0.
- 범희권, 산업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표준화 정책방향, 유체기계저널 제7권 제3호, 유체기계공업학회, 2004. 6.
- 오준근, 지정제도의 입법구조 분석, 월간법제, 법제처, 2002. 6.
- 윤강술·강대경, 시장에 있어서 국제표준화의 채택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2호(상),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
- 정재익 외, 국가표준체제의 유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8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2008.
-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참 고 문 헌

한장섭, 21세기 표준의 역할과 국제표준화 동향, 공업화학전망 제7권 제5호, 한국공업화학협회, 2004.

Ch. Knill, The Europeanis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s: Pattern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Persist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OECD, 世界の規制改革 上/下, OECD, 1997.